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2 제출연월일: 2007. 8.24.

제 출 자: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시·구 및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2).
- 나.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추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7. 6. ~ 7. 2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6조제2항중 "에너지시책"을 "에너지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시책"으로 한다.
-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설치의무기관의 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설치의무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제1항제3호중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을 "에너지절약"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경차"를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 혅 제5조(시의 책무) ① (생략) ②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②------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u>신·재생에너지</u>--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③ ~ ⑦ (생략)

제6조(구의 책무) ① (생략)

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개 정 안

제5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③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 ·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구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 ②-----에너지시책 및 신·재생에 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시책----

> 제7조의2(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의무기 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 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의 장이 설치의무대상기관 여부를 확 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신・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생략)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	3
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 <u>절</u>	<u>에</u>
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	<u> 너지절약</u>
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u>에 의거 에너지절약</u>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3
경우 <u>경차</u> 구입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 에너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 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 4. 국·공립 연구기관
 - ②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 정부투자기관
-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 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1조 (신·재생에너지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 너지관련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 3. 기보급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관리
 -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 1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 제8호 나목 내지 아목, 제9호 내지 제12호, 제19호 가목·나목·라목 내지 아목, 제20호 또는 제21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 제16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초로 하여야 한다.

-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제1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8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운영규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10호, 2004. 4. 28)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이하 "의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의무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무이용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설치자금"이라 함은 의무이용기관이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3. "시범사업"이라 함은 의무화 시행초기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별·규모별 시범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의무화의 효과적 추진 및 사업홍보 등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의무이용기관에게 설치자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전담기관) ①이 규정에 의한 의무화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전담기관은 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②센터는 대체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의 검토 및 설치확인, 시범사업 추진 등 의무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화의 수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운영내규 제정등) ①센터의 장은 의무화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 ②센터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의무화 추진에 관한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센터의 장은 의무화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센터에 의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 영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7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제7조(설치계획서) ①영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해당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설치계획 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설치코자 하는 대체에너지설비의 축소나 대체에너지 원의 변경 등 설치계획서의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센터의 장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면제) ①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체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이하 "설치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치면제신청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무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대체에너지설비 설치 확인) 의무이용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5의 규정과 관련하여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센터의 장은 영 제16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이용 기관의 장에게 대체에너지설비 이용현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②(경과조치) 2004.1.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의무이용기관의 장이 시범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2007. 4. 1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6조(적용기관 등) ①이 규정을 적용받는 설치의무기관은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한다.
 -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관의 대상여부를 년 1회이상 확인 하여야 하며, 신축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하 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기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 3. 기타 적용대상기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제47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별표 6에서 정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1항에 규정한 검토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설치계획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의무기관설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8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제2항의 단서에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단가가 제13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설 비의 원별 설치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 2. 종전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⑤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⑥설치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⑦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⑧센터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설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8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 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연구용 또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 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고유적 외관 및 기능적 요구조건 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 4.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5.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건축공사비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6.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9조(설치비 산정기준 및 방법)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제50조(설비의 설치)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입찰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경쟁입찰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기업에게 원도급자의 자격을 부 여하여야 한다.
 - ②경쟁입찰시 낙찰단가는 제13조에 규정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설치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1조(설치확인서 신청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센터의 장은 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52조에 규정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2조(설치계획서 및 설치확인서 검토기준) ①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한 대상건축물 부합여부
 - 2.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부합여부
 - 3. 제13조에 규정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설치단가 부합여부
 - 4.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투자금액이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총건축공사비의 5% 충족여부
 - 5. 태양열설비의 일부적용 대상건축물인지의 여부

- ②설치확인서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
-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확인기관의 확인여부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제정 1999. 1. 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6호 개정 2001. 3.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33호 개정 2002. 9.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7호 개정 2004. 1. 2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호 개정 2005. 4. 2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5호 개정 2006. 4. 1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9호 개정 2007. 2. 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2호

■ 국무총리 지시 제2007-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조의2~3의 신설 등에 따라「국무총리지시」제2005-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07. 3. 2국 무 총 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1996. 12. 6 국무총리 지시 제 1996 16호 개정 1998. 7. 2 국무총리 지시 제 1998 18호 개정 1999. 9. 8 국무총리 지시 제 1999 22호 개정 2001. 1. 30 국무총리 지시 제 2001 5호 개정 2002. 4. 4 국무총리 지시 제 2002 4호 개정 2003. 7. 9 국무총리 지시 제 2003 9호 개정 2004. 2. 2 국무총리 지시 제 2004 1호 개정 2005. 2. 28 국무총리 지시 제 2005 5호